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28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3778 과점주주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 고	1. ○○○○시 ○○○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시 ○○○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3. ○○○○시 ○○○청장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기재 취득세와 농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28

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4. 9. 26. 주택신축 판매업, 건설업(주택)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3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 3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일인 2014. 9. 26.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

구분	원고	C	D
주식 수	13,500	10,500	6,000
비율	45%	35%	20%

다.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시	구분	합계	원고	C	D	E	F	G	H
2015.	주식 수	30,000	8,700		6,000	12,000	3,3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28

5. 29.	지분율	100	29%		20%	40%	11%		
2015. 7. 15.	주식 수		2,700		6,000	12,000	3,300	6,000	
	지분율	100	9%		20%	40%	11%	20%	
2015. 11. 10.	주식 수	30,000	2,700		6,000	3,000	3,300	6,000	9,000
	지분율	100	9%		20%	10%	11%	20%	30%
2016. 6. 10.	주식 수	30,000	2,700		6,000	9,000	3,300		9,000
	지분율	100	9%		20%	30%	11%		30%
2017. 3. 22.	주식 수	30,000	13,500	10,500	6,000				
	지분율	100	45%	35%	20%				
2017. 3. 23.	주식 수	30,000	24,000		6,000				
	지분율	100	80%		20%				

라.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게 '원고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2017. 3. 23. C 명의의 주식 10,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의 50을 초과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80%(24,000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 소유 재산의 장부상 가액 68,969,848,534원 중 원고 지분율 80%에 해당하는 55,175,878,8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5. 11. 감사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7.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2017. 3. 22. I, F, H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는 원고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를 해소할 목적으로 위 I 등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을 허위로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는 C 명의였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7. 3. 23. 이를 해지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 그런데 이는 실질주주인 원고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28

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참조).

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단순히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28

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2017. 3. 23. 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제14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3, 제18, 1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7. 3. 23.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회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28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J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고 명의 주식 뿐만 아니라 C 명의의 주식까지 포함하여 발행주식 30,000주에 상응하는 자본금 300,000,000원 전액을 납입하였고, C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주식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② C은 2017. 3. 23.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식 10,500주를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실제 소유주인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명의를 신탁해 둔 주식으로 추후 원고가 주식 이전을 요구할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넘겨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아가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원고가 그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를 믿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본 등 필요서류를 원고에게 건네 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실제 원고의 소유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듭 진술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2017. 3. 22. C에게 '다름이 아니라 회사주식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2통이 내일 필요하네. 부탁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만약 C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였다고 한다면, C이 그 다음날 원고에게 10,500주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면서도 원고가 주식의 인수대금 등에 관한 언급 없이 단순히 회사 주식 문제를 정리한다는 취지로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부탁한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양도받은 2017. 3. 23. 뿐만 아니라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C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 등을 요구하거나 C에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28

주식 양도대금 등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인 2015. 6. 3. 주식회사 K으로부터 6,2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명의의 주식 10,800주와 C 명의의 이 사건 주식 10,500주를 양도하였는데, 위 차입금 약정 계약에도 원고만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담보 제공 또한 모두 원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C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겸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도 찾을 수 없다.

⑥ L회계법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작성한 세무자문 용역보고서 등도 원고가 C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2017. 3. 23.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2020. 1. 16. 증여세 17,887,100원을 납부하였다.

⑦ 원고가 주식회사 K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의 소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도 2023. 5. 16. '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명의를 신탁해 둔 주식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K이 원고에게 21,3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 5. 16. 선고 2021나27868 판결).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017. 3. 23.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28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28

[별지 1]

목 록

피고(처분청)	처분일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원)	합계(원)
○○○○시 ○○○청장	2020. 2. 12.	938,648,060	81,299,960	1,019,948,020
○○○○시 ○○○청장	2020. 2. 12.	699,982,510	60,768,980	760,751,490
○○○○시 ○○○청장	2020. 2. 13.	3,326,750		3,326,75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28

[별지 2]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8-28

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끝.